

부천북부역주변지하도건설타당성조사



〈그림 1-1〉 과업대상의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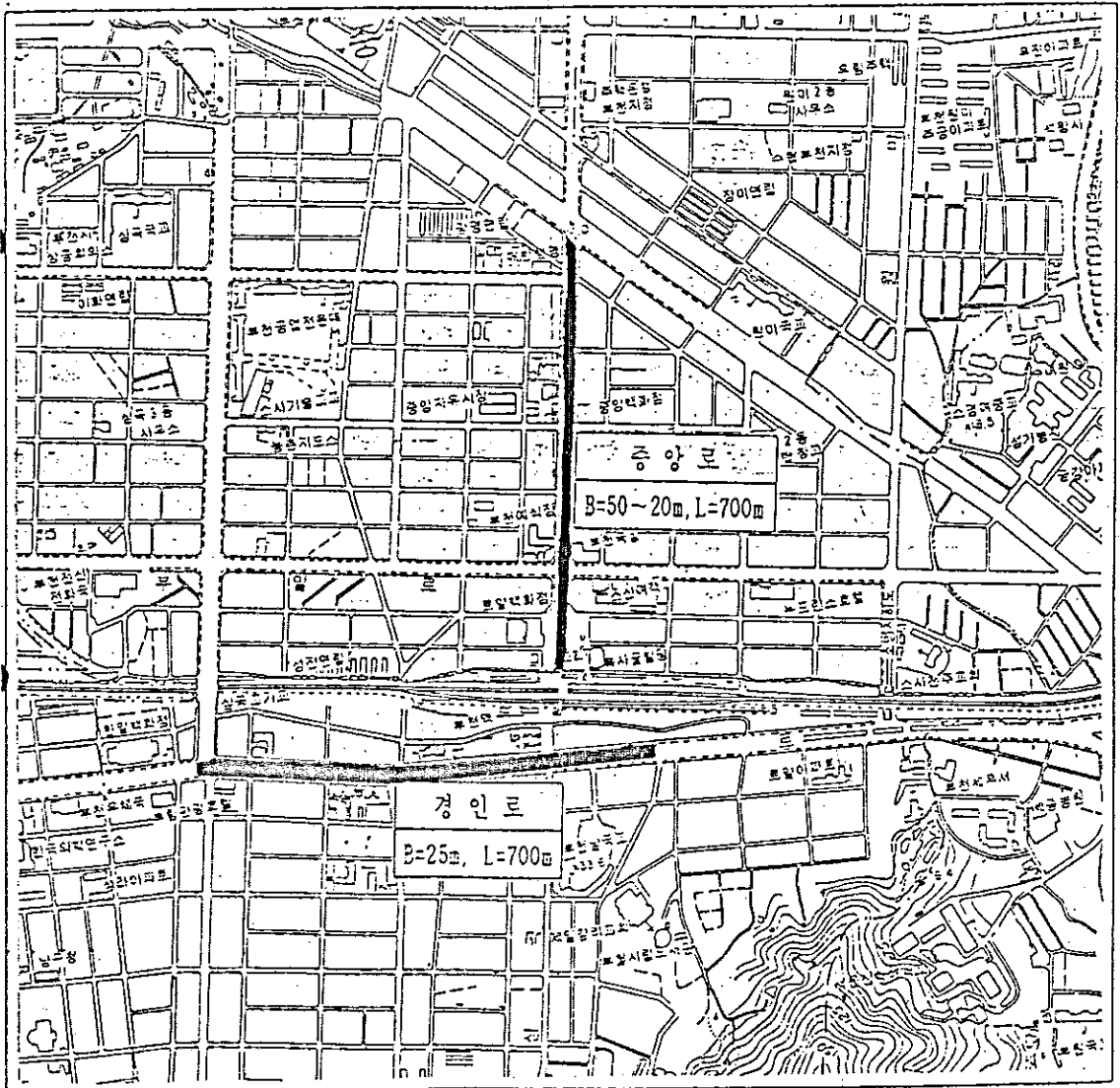
97. 2. 4.

민자유치건설추진계획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상가 및 주차장 겸용)건설

부 천 시

◆ 위치도



부 천 시

우420-111 /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 71번지 / 전화(032)650-2468 / 전승 도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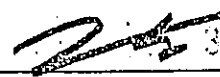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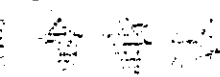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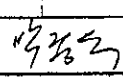
문서번호 도르58710 - 211

시행일자 97.02.5.()

경유

수신 기획담당관

참조

취급	협조	과	장
보존		  도르시설계장  협조	
기안			

제목 민자유치사업기본계획(안) 심사의뢰

경인로 및 증양로 지하도로(상가 및 주차장 겸용)건설 민자유치사업기본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승부하오니 부천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의안건 16부. 끝.

도 로 과 장

회 의 록

○ 사회자 : 지금부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으로부터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도로과장 :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이번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경인로 및 중앙로의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교통난 해소 및 시민편익시설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상가 및 주차장을 겸용하는 지하도로를 건설하여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사업시행조건, 사업시행자 지정조건, 사업시행자 지정방법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신청 자격은 민자유치기본(안)에 대한 자격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출자자인 경우 2개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이 50%를 초과하여야 하며 최상의 출자자는 지분율이 3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천시에 주 영업소를 둔 법인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출자 지분율은 10% 이상 되도록 하여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필수 항목을 부여하였습니다.

...진행을 못 하죠 오늘(안)이 목적은 예산을 들일 거냐 민간자본을 들여서 할 것이냐 그런데 하는 방법은 뭐냐 하는 신청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안)인데 오늘 이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이걸 안하겠다는 것이냐 같지 않습니까?

○ 오명근 위원 : 안하겠다는 게 아니지요.

○ 이충식 위원 : 아니 이게 끝나면 공고를 해야 하거든요. 공고를 해서 대상자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인데 공고를 할 수가 없죠

○ 오명근 위원 : 우리가 좀더 분석을 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공고를 할 수 있는 거죠

○ 김시곤 위원 : 이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해서 나가면 좋죠. 그렇게 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실시설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끝난 다음에 나가는 방법, 기본설계까지 해가지고 나가는 방법, 실시설계까지 다해가지고 돈만 가지고 와서 짓고 이익만 가지고 가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시장님과 위원님하고 생각하시는 게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건드려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정리해서 심의하자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요. 부시장님이 해석하시는 것은 타당성조사도 안해 봤는데 타당성까지 다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 배용수 위원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세부적으로 고치고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위치, 규모, 추정사업비, 사업기간 해가지고 그 밑에 하나만 더 적어 놓으면 됩니다. 이것은 “부천시에서 생각하는 기본방향에...”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하여 보완에 대한 것은 큰 골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분에 대한 용어의 정의라든가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부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조건부로 의결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팩스로도 가능하거든요. 문제 있는 것은 그렇게 보완을 해서 같이 수정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 교수님들과 전문가 분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민자유치에 대하여는 조금더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서 토론되었던 사항을 저희들이 조금더 보완을 해서 일단 오늘 회의에선 보류를 하고 다음번에 회의를 소집해서 의결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분석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오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부천시민들의 이해관계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다루는 게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시간이 소요는 겠지만 자주 열어 의견을 토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 회의에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을 다소 보완을 해서 다음번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 : 이상으로 부천시민자유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편 기획관리 제2장 경영사업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1995. 6. 19]
조례 제13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부천시의회의원(각 상임위원회별 1인)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부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제54회 - 건설교통위 제3차】

사업은 안할 수도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제가 안하고 하고 결정짓는 것보다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하는 게 좋으나 안하는 게 좋으나는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지요.

○ 정월남 위원 우리가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그러면 저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 정월남 위원 우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조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남부역 지하상가에 대한 최초 건설사업을 했을 때 그 계약 내용을 국장님은 읽어보셨어요?

○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언제 계약을 말씀하시는....

○ 위원장 서영석 남부 지하상가를 최초에 팔 때 그 건설회사와 우리 시와의 계약서를 읽어보셨느냐고요?

○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 위원장 서영석 기억이 없지요?

그러면 이게,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본 사회자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는데, 이 부분에 접근하려다 보니까 남부 지하상가를 대조를 안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15년 동안 무상임대를 주고 지금 우리 부천시로 귀속이 됐지요. 남부 지하상가가?

○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거기에 발생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 당시에 하신 분들이야 그 나름대로 그 때 당시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셨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사업신청 자격이나 관리 운영권 인계 또 상가임대료, 주차료 결정문제 또 유지보수 및 관리에 좀 보완을 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석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부천시로 귀속을 하면서 작년에 설계변경을 3차인가까지 들어갔지요, 그게?

○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제가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서영석 담당국장님이 그런 걸 모르시고 중앙로 이걸 하신다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공고를

낸다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 위원장 서영석 왜 없습니까?

잘못 됐으면 똑같은 중앙로 입장에서, 지하도 입장에서 대비를 해가면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르신다면 뭐니까, 이게?

○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위원장님 그렇게 역정을 내실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보완을 서너 가지를 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것을 아느냐는 건 그걸 취급을 안했으니까 모른다는 거는, 더 이상 답을 어떻게 해요.

○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표에 보면 1203억인가 돼 있지요, 소요예산이?

○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 위원장 서영석 그럼 이렇게 큰, 민자든 우리 시 사업이든 이런 사업이 들어갈 때는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그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부분에서, 남부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가 중앙로를 개설하면서, 중앙로 지하상가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완을 할 겁니까라고 보고를...